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754 발의연월일: 2024. 11. 21.

발 의 자:김장겸·안철수·김기현

박준태 · 조정훈 · 우재준

김예지 • 최수진 • 김소희

강대식 • 배현진 • 박충권

박정훈 • 고동진 • 박성민

최형두 • 박대출 의원

(179]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하 "국외사업자"라 함)으로부터 국내 이용자들의 권리보호와 국 외사업자 이용자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해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사업자의 경우 큰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이용자수 등이 현행법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국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의 적용을 거부하며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침해, 저작권침해, 음란물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법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용자 권리 침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국내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워 국내사업자들과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국외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확대하고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 과징금, 광고금지가 가능하게 하여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외사업자에게 우리 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 제44조의7, 제44조의11·제44조의12·제44조의13·제44조의14 신설 등).

주요내용

- 가. 국내대리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 등을 추가하여 현실화(안 제32조의5 등)
- 나. 청소년보호책임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불법정보유통방지 등 국 내대리인의 의무 강화(안 제32조의5 등)
- 다.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유통금지 정보 및 불법정보에 개인정보 침해 · 저작권 침해 정보 추가(안 제44조, 제44조의7 등)

- 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 침해 피해자의 정보 삭제 요청을 위한 요건을 '소명'에서 '근거 첨부'로 완화(안 제44조의2)
- 마. 불법정보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법정보가 계속 유통되고 있는 사이트에 광고 금지(안 제44조의7)
- 바. 이용자 보호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서비스 접 속 차단 및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 마련(안 제44조의12 등)
- 사. 정부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침해 회복 및 국외사업자의 제재조치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국제 협력의무 부여(안 제6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출액"을 "매출액, 트래픽 양"으로, "자는"을 "자(이하 "지정의무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내대리인"을 각각 "지정의무자와 국내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42조의3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
- 2의3.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업무
- 2의4. 제44조의11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의 업무
- 이 경우 지정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지정의무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 2. 지정의무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지정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게 해당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연대하여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지정의무자 또는 관련 기관에게 이용자 수, 매출액, 트래픽 양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매출액"을 "매출액, 트래픽 양"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생활 침해"를 각각 "사생활 침해·개인정보 침해·저작권 침해"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전단 중 "침해나"를 "침해·개인정보 침해·저작권 침해나"로, "침해사실을 소명"을 "근거를 첨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전단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 중 "사생활 침해"를 "사생활 침해·개인정보 침해·저 작권 침해"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2 중 "거래하는"을 "거래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4 및 제6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

- 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제6호의2,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6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4.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 된 내용의 정보
 - 6의5. 저작권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 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의 정보
 - ⑥ 누구든지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불법정보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하고 있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광고하거나 그 광고를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트래픽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44조의7에따른 불법정보(불법촬영물등은 제외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책임자(이하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자료제출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제44조의12(접속 차단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 1. 제32조의5를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2. 제42조의3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3.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삭제 ·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 4.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 정하지 아니한 자
- 6.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 7. 제44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8.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9. 제64조의5를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접속 차단 조치를 받고 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미리 의견제출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제44조의13(과징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44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서비스 접속 차단을 명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 차단이 해당 정보통신망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접속 차단 조치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동종 유사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①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44조의1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13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단서 중 "매출액"을 "매출액 및 트래픽 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출액"을 "매출액 및 트래픽 양"으로 한다.

제62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방지 및 회복을 위한 업무
- 3의3. 국외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집행의 실효성 확보 를 위한 업무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출액"을 "매출액, 트래픽 양"으로, "불법촬영물등"을 "불법촬영물등 및 불법정보"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불법촬영물등"을 "불법촬영물등 및 불법정보"로 하며,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을 각각 "제44조의7에 따

른 불법정보 및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책임자"를 "책임자 및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로 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2. 제44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한 자.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한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의2. 제44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제품, 서비스 등을 광고한 자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를 "제72조제1항제2호, 제73조제5호 및 제7호, 제7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76조제1항에 제2호의7부터 제2호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7.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의8. 제3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 2의9. 제3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지 아 니한 자
- 2의10. 제32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 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의5. 제44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 정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	
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	
로서 이용자 수, <u>매출액</u> 등을	<u>매출액, 트래픽</u>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양</u>
기준에 해당하는 <u>자는</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u>정의무자"라 한다)는</u>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의2. 제42조의3에 따른 청소년</u>
	보호 책임자의 업무
<u><신 설></u>	2의3.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
	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업
	<u>무</u>
<u><신 설></u>	2의4. 제44조의11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의 업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2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후단 신설>	이 경우 지정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 설>

<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 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u>국내대리인</u>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의 성명을 말한다)
- 2. <u>국내대리인</u>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 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생 략)

<신 설>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지정의무자가 설립한 국내
<u>법인</u>
2. 지정의무자가 임원 구성, 사
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u>법인</u>
<u> </u>
1. 지정의무자와 국내대리인
_
2. 지정의무자와 국내대리인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지정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부

<신 <u>설></u>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 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 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 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

과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게 해당 과징금이 나 과태료를 연대하여 납부하 도록 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지정 의무자 또는 관련 기관에게 이 용자 수, 매출액, 트래픽 양 등 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14211000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지정 등) ①
<u>매출액, 트래픽 양</u>

② ~ ④ (현행과 같음) 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호) ①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 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 (생 략)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 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u>사</u> 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 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 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개인정보 침해·저작권 침해
	생활 침해・개인정보 침해・저작권 침해
제	
	①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 ⑥ (생 략)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u>사생활 침</u>한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u>.</u>
②・③ (현행과 같음)
4
하여야 한다
· ⑤·⑥ (현행과 같음)
에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
사생활 침
해 · 개인정보 침해 · 저작권 침
해
<u>~ </u>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전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u>거래하는</u> 내용의 정보

6의3. (생략)

<신 설>

<신 설>

7. ~ 9. (생 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 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1. ~ 6. (현행과 같음)
6의2
<u>거래하는 등 개인정</u>
<u>보를 침해하는</u>
6의3. (현행과 같음)
6의4.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
록 조작된 내용의 정보
6의5. 저작권 등 「저작권법」
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
해하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
물을 포함한다) 등의 정보
7. ~ 9. (현행과 같음)
②
<u>제6호의2,</u>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6호의
<u>5</u>

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 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 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을 명할 수 없다.

③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⑤ 누구든지 특정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가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불법정보의 거부·정 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법정 보를 유통하고 있는 자인 사실 을 알면서 해당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광고하 거나 그 광고를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11(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 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제44조 의7에 따른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 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 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불법촬영물등은 제외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u><신 설></u>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 검하게 하거나,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 리·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자료제출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2(접속 차단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 제32조의5를 위반하여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제42조의3을 위반하여 청소
 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3.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 4.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6.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 7. 제44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지정하지 아니한 자
- 8.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아니한 자
- 9. 제64조의5를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자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 항에 따른 접속 차단 조치를 받고 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

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용하는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수있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및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

 하여 긴급히 조치를 할 필요

 가 있는 경우
-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제44조의13(과징금) ① 방송통신

<신 설>

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가 제44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서비스 접속 차단을 명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 차단 이 해당 정보통신망서비스 이 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 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접속 차 단 조치를 갈음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 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 리·운영자가 매출액 산정 자 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 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 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동 종 유사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 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 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 설>

⑦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 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 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 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 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 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 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 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4조의1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통 신위원회는 제44조의13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 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 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 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 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 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의 지정 등) ① -----

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u>매출액</u>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자산총액, <u>매출액</u>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로 한정한다)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④ ~ ⑦ (생 략)

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저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u>\$</u>
② (현행과 같음)
③
<u>매출액 및 트래픽</u>
야는
④ ~ ⑦ (현행과 같음)
62조(국제협력)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방지 및 회복을 위
<u>한 업무</u>

<신 설>

4. (생략)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u>불</u> 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 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 2. <u>「전기통신사업법」</u> 제22조 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 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3의3. 국외사업자의 법령 위반
에 대한 제재조치 집행의 실
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
4. (현행과 같음)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
무 등) ①
<u>매출액, 트래픽 양</u>
불법촬영
물등 및 불법정보 물등 및 불법정보
· 1
<u></u> 법촬영물등 및 불법정보
2. <u>제44</u> 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전기통신사업법」
<u> </u>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3. <u>「전기통신사업법」</u> 제22조 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u>책임</u> 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 5. (생략)
- ② · ③ (생 략)
-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 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 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

_				
3.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	<u>보</u>
1	및 「전기통신	사업법]	
-				
-				
-				
4.			<u>え</u>	<u> 임</u>
2	아 및 불법정.	보 유	통방지	책
(임자			
5.	(현행과 같음)		
2	• ③ (현행과	같음)		
제74	조(벌칙)			

- 1. (현행과 같음)
- 2. 제44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한 자.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한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없다.

<삭 제>

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 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신 설>

4. ~ 7. (생략)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 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 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 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 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의2.제44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제품, 서비스 등을 광고한자4. ~ 7. (현행과 같음)<삭 제>

┥)′	75 <i>3</i>	돈의2(몰수	• 추	징) <u>2</u>	제723	조제1
-	항공]2호,	제7	3조기	세5호	및	제7
2	호,	제74	조제]	항제] <u>2호</u> -		
쉐′	76 <i>3</i>	조(과 E	대료)	1 -			

를 부과한다.

1. ~ 2의6.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3. ~ 12.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의2. (생략)
-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4. (생략)

<u><신</u> 설>

③ • ④ (생 략)

-----.

- 1. ~ 2의6. (현행과 같음)
- 2의7.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2의8. 제32조의5제2항을 위반하 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 2의9. 제32조의5제3항을 위반하 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 하지 아니한 자
- 2의10. 제32조의5제6항을 위반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 12. (현행과 같음)
- (2) -----

-----.

1. ~ 4의2. (현행과 같음) <삭 제>

4의4. (현행과 같음)

4의5.제44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③ • ④ (현행과 같음)